선거권자(유권자)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선거권자(유권자)]

우리나라의 선거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가 있으며, 대통령선거는 5년, 국회의원 · 지방의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4년마다 치러집니다. 선거는 ① 정당 또는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 ② 추천된 후보자의 등록 ③ 등록한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선거운동 ④ 선거권자의 투표 ⑤ 당선자의 결정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유권자는 법령에 따른 범위에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권자(유권자) 1
1. 선거개관 4
1.1. 선거개요 4
1.1.1. 선거의 개념 및 종류 4
1.1.2. 선거절차 개관 7
1.2. 선거관련 법제 11
1.2.1. 선거관련 법제 11
2.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13
2.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13
2.1.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13
2.2. 동시선거 14
2.2.1. 동시선거 14
2.3. 보궐선거 16
2.3.1. 보궐선거 16
2.4. 재선거 등 18
2.4.1. 재선거 등 18
3. 유권자의 선거참여 22
3.1. 후보자 추천 22
3.1.1. 후보자 추천 22
3.2.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23
3.2.1.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23
3.2.2. 후원회 25
3.2.3. 후원금 29
3.2.4. 기탁금 32
3.3.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34
3.3.1. 선거운동 개요 34
3.3.2.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39
3.3.3.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43
3.3.4. 제한 · 금지되는 선거운동 53
4.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65
4.1. 투표권자 65
4.1.1. 일반선거인 65
4.1.2.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67
4.2.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69
4.2.1.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69
4.3. 투표의 방법 71
4.3.1. 투표 개요 71
4.3.2. 일반선거인의 투표 71
4.3.3.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74
5.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79
5.1.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79
5.1.1.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79
5.1.2.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81
5.2. 선거쟁송 83
5.2.1. 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83
5.2.2. 선거소송 86
5.2.3. 당선소송 87

1. 선거개관

1.1. 선거개요

1.1.1. 선거의 개념 및 종류

선거와 투표의 개념 정의

선거와 투표의 개념

▪ “선거”란 선거권을 가진 사람이 공직에 임할 사람을 뽑는 것을 말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 및 제67조 참조).

▪ 한편, “투표”란 선거나 안건의 의결 등에서 유권자, 의원 등이 표를 넣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1항 참조).

선거권, 피선거권 및 선거인

선거권

▪ “선거권”이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의 대표적인 것으로 선거인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민이 각종의 공무원을 선출하는 권리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참조).

※ 선거권이 있는 사람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권자**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유권자**라는 용어가 많이 쓰이고 있어 이 콘텐츠에서는 선거권자와 유권자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도록 합니다.

▪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 다만, 지역구국회의원의 선거권은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1항).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18세 이상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피선거권

▪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선거일 현재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1항).

▪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2항).

▪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귀국한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이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전단).

▹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공직선거법」 제28조의 어느 하나에 따른 구역변경을 포함)에 따라 중단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3항 후단).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주민등록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있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제4항).

※ 피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선거인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조).

선거의 종류

선거의 종류

▪ 「공직선거법」에 따라 유권자는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권자는 교육감선거에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교육감선거 및 교육의원선거의 절차 및 내용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임기 및 선거일

▪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대한민국헌법」 제42조 및 제70조).

선거의 종류	임기	선거일
대통령선거	5년 [중임(重任) 불가]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선거	4년 [재임(再任) 가능]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의원	4년 [재임(再任) 가능]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4년 (3번 재임 가능)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선거권의 행사

선거권 행사의 보장

▪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를 위해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사람이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하며, 이 경우 이를 휴무나 휴업으로 보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3항, 「근로기준법」 제10조).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 정합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 및 「공직선거법」 제34조).

※ 근로자에게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는 선거인의 투표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거주하는 선거인 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 대한 교통편의 제공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국공립 유료시설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하는 등의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정한 실시방법 등을 정당·후보자와 미리 협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

▪ 다른 자에게 고용된 사람이 사전투표기간 및 선거일에 모두 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에 따라 투표를 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1항·제2항).

▪ 고용주는 고용된 사람이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선거일 전 7일부터 선거일 전 3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2제3항).

감염병환자 등의 선거권 보장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다음의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 자가(自家)치료 또는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이라도 선거권 행사를 위해 활동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제41조제1항·제2항, 제42조제2항제1호 및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제10호 참조).

제1급감염병	지정 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등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결핵, 홍역, 콜레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 등의 선거권행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 및 그 밖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조의3제2항).

※ 감염병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감염병의 신고 및 치료·관리-감염병 환자 치료·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콘텐츠는 국내의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재외선거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1.2. 선거절차 개관

후보자 추천

정당후보자의 추천

▪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제2항).

▪ 정당은 선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여성후보자 추천 확대를 위한 다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지역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합니다.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무소속후보자 추천)

▪ 선거권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관할 선거구에서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을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이하 ´무소속후보자´라 함)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후보자 등록

후보자 등록

▪ 대통령선거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후보자등록을 해야 하며, 이때 후보자 추천을 받은 사람은 각종 구비서류 및 기탁금을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9조제1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각종 구비서류 외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경력에 관한 증명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호).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

선거별 후보자의 기탁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아래 기탁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합니다. 다만 장애인 또는 39세 이하의 사람이 납부하는 기탁금의 감액비율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6조제1항 및 제4항).

√ 대통령선거: 3억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500만원
√ 시·도의회의원선거: 300만원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천만원
√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1천만원
√ 자치구·시·군의원선거: 200만원

선거운동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하며, 법에서 금지 또는 제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

▪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이 경우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함)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함]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이 경우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함)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투표

투표

▪ “투표”란 선거를 하거나 가부를 결정할 때 투표용지에 의사를 표시하여 제출하는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선거의 방법으로 투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1항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투표는 1인 1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씩을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단서).

당선

대통령선거

▪ 대통령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 총수의 1/3 이상에 달해야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

▪ 대통령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따라 국회의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7조제2항).

국회의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1항).

▹ 후보자등록 마감시각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1명이거나 후보자등록 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 시각 전까지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되어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 수가 1명이 된 경우에는 지역구국회의원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8조제2항).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5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정당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결정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정당별로 제출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지방의회의원선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에서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 순으로 의원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본문).

▹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에 따라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1항 단서).

▹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거나 후보자등록마감 후 선거일 투표개시시각까지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않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제2항).

▪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

▹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 총수의 5% 이상을 득표한 각 정당에 대해 해당 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정수를 곱해 산출된 수의 정수의 의석을 그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단수(端數)가 큰 순으로 각 의석할당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같은 단수가 있는 때에는 그 득표수가 많은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그 득표수가 같은 때에는 해당 정당 사이의 추첨(抽籤)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 제5위를 반올림해서 산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0조의2제1항 후단).

▹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별로 결정된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의석 수만큼을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이 될 순위에 따라 각 정당의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9조제4항 및 제190조의2제4항).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선거의 경우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며, 후보자가 1명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1조제1항 단서·제3항, 제18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1.2. 선거관련 법제

1.2.1. 선거관련 법제

「대한민국헌법」

「대한민국헌법」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을 가지고(「대한민국헌법」 제24조), 선거운동 시에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1항).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는 '선거공영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6조제2항).

▪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국회를 구성하고(「대한민국헌법」 제41조 제1항),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의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고,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118조).

「공직선거법」

선거권과 피선거권

▪ 「공직선거법」에 따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집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제16조).

선거기간과 선거일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별로 선거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으며, 임기만료, 보궐선거, 재선거 등의 사유에 따라 선거일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운동

▪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인 선거운동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기간에, 정해진 사람이, 정해진 범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부터 제118조까지).

투표

▪ 투표의 절차와 방법, 투표 시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부터 제171조까지).

재선거·보궐선거 및 동시선거

▪ 재선거, 보궐선거, 선거의 연기, 동시선거 등의 사유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부터 제201조까지).

재외선거 등

▪ 재외선거인 투표 및 국외부재자투표를 다루며, 투표방법과 절차, 제한·금지사항 등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 및 제218조의2부터 제218조의35까지).

선거에 관한 쟁송

▪ 선거 후 그 선거의 효력 및 당선의 효력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법원에 선거소송 또는 당선소송을 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

벌칙

▪ 선거범죄의 종류, 처벌방법 및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보호·포상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부터 제262조의3까지).

「정치자금법」

후원금 모금

▪ 후원회 지정권자(교육감후보자 포함)는 후원회를 지정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6조), 등록된 후원회(「정치자금법」 제7조)는 후원인으로부터 정해진 모금방법(「정치자금법」 제14조)에 따라 후원금을 모금(「정치자금법」 제10조)할 수 있습니다.

후원금 기부

▪ 후원인은 후원금의 기부한도에서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11조),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제17조)을 교부받아 세액공제(「정치자금법」 제59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탁금

▪ 기탁금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일정 한도 안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수 있으며(「정치자금법」 제22조). 정치자금영수증(「정치자금법」 제17조)을 교부받아 세액공제(「정치자금법」 제59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지급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교육감의 선거

▪ 교육감의 선출방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 선거구(「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45조),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공무원의 입후보(「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7조) 등 선거와 관련한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 그 외의 교육감 선출절차는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후원회의 지정 등 정치자금과 관련된 부분은 「정치자금법」의 시·도지사 선거의 경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은 국가직공무원 및 지방직공무원에 대해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제2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57조제1항·제2항).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은 자원봉사단체와 자원봉사센터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2. 사유에 따른 선거의 유형

2.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2.1.1.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선거의 종류에 따른 임기

대통령선거

▪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67조제1항 및 제70조 전단).

▪ 대통령은 중임(重任)할 수 없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70조 후단).

국회의원선거

▪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며,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대한민국헌법」 제41조제1항 및 제42조).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임기는 4년이며, 주민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선출합니다(「지방자치법」 제38조, 제39조, 제107조, 제108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43조).

▪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3번에 한해 재임(再任)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법」 제108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1조).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 선거별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국회의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4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에서 말하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다음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
  - √ 일요일
  - √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 √ 1월 1일
  - √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노동절(5월 1일)

√ 어린이날(5월 5일)

√ 현충일(6월 6일)

√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 기독탄신일(12월 25일)

√ 한식일

2.2. 동시선거

2.2.1. 동시선거

동시선거의 개념 및 기간

동시선거의 개념

▪ “동시선거”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종류 이상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3항제11호).

동시선거의 기간

▪ 동시선거의 경우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20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동시선거의 범위 및 선거일 결정

지방선거

▪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기간 중에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들어있는 경우

▸ 보궐선거 등을 실시할 수 있는 기간의 만료일이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 후에 있지만 보궐선거 등의 실시사유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된 경우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재선거·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 위 보궐선거 등(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5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가목 단서).

동시선거의 투표방법

동시선거의 투표절차

▪ 투표용지의 교부

▹ 동시선거에서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이 동시에 실시하는 각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자신의 도장을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 기표

▹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은 각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기표한 후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1조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9조제1항).

4종류 이상의 동시선거인 경우 투표절차

▪ 투표용지의 교부

▹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 등을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투표관리관은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에게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그 투표관리관의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하게 하고,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에는 투표관리관이 사인을 각각 날인하여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본문).

√ 다만,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와 보궐선거등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선거를 동시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용지 교부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의 내용 외의 4종류 이상의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

√ 투표용지의 교부는 선거구의 구역이 작은 선거부터 선거구의 구역이 큰 선거의 순(자치구·시·군의 장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구역이 같은 때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순)으로 2회에 나누어 투표관리관이 투표사무원 중에서 지정한 1명이 먼저 교부하고, 나머지 투표용지는 투표관리관이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2항).

▪ 기표

▹ 선거인은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의 선거의 투표용지에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후, 시·도의원 및 시·도지사의 선거의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각각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한다)를 선택하는 표를 하여 투표함에 투입한

다음 투표소에서 퇴소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6조제5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3조제1항 본문).

2.3. 보궐선거

2.3.1. 보궐선거

보궐선거의 개념 등

보궐선거의 개념

▪ “보궐선거”란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에 궐원(闕員) 또는 궐위(闕位)가 생긴 경우에 실시하는 선거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의석을 승계할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의석을 승계할 사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3항).

궐위(闕位) 또는 궐원(闕員)의 통보

궐위 또는 결원의 통보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궐위 또는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중 궐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하며, 통보권자 및 피통보권자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4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궐위 또는 궐원자	통보권자	피통보권자
대통령	대통령권한대행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원	국회의장	대통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	지방의회의장	지방자치단체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장 직무대행자	지방의회의장,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교육감	교육감직무대행자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선거 등에 입후보하기 위해 그 직을 그만두었으나 후보자등록신청 시까지 궐원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등록된 때에 그 통보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6항).

보궐선거의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闕位)에 따른 선거

▪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 이 경우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보궐선거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보궐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감의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는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 이 경우 4월 30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1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은 해당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4항).

▪ 위 보궐선거 등(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제외)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 대통령의 궐위(闕位)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그 보궐선거 등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3조제5항).

>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지역구국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은 관할 선거구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사유의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보궐선거 등에 관한 특례

보궐선거의 실시

▪ 보궐선거 등(대통령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은 그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 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 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사유에 따른 경우는 제외)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 경우 지방의회의원정수의 1/4 이상이 궐원되어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는 때에는 그 궐원된 의원 전원에 대해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1항 후단).

▪ 선거소청, 당선소송 중 보궐선거 미실시

▹ 선거소청, 당선소송 등 당선의 효력에 관한 쟁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 등의 선거구

▪ 지방의회의원의 보궐선거·재선거·연기된 선거 또는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변경에 따라 그 선거구의 구역이 그 지방의회의원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상응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치게 된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속한 구역만을 그 선거구의 구역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01조제3항).

2.4. 재선거 등

2.4.1. 재선거 등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의 재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경우

▹ 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않은 경우

▹ 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경우

▹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따라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3항에 따라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 선거비용의 초과지출, 당선인의 선거범죄,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이 무효로 된 경우

▪ 하나의 선거에서 같은 선거구에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후 재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로서 그 선거일이 같은 때에는 재선거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9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가 무효로 된 해당 투표구의 재선거를 실시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이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또는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 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획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거하며, 종전 지방의회의원이 없거나 종전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그 선거구의 의원정수에 미달되는 선거구에 대해 증원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29조제1항, 제28조 단서, 같은 조 제3호 단서, 제5호 및 제6호 참조).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변경되었으나, 변경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수가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새로운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 읍 또는 면이 시로 된 경우
- 시가 광역시로 변경되면서 자치구가 아닌 구가 자치구로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지방자치단체가 폐치·분합하여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가 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실시합니다(「공직선거법」 제3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시·자치구 또는 광역시가 새로 설치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 하나의 지방자치단체가 분할되어 2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설치된 지방자치단체 중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장은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 규모에 따라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를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보며, 시, 군, 구를 또 하나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로 봅니다(「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 2개 이상의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가 합하여 새로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된 때에는 종전의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직을 상실하고, 새로운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해 새로 선거를 실시합니다.

선거의 연기

선거 연기의 사유

▪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직무대행자를 포함)과 협의하여 선거를 연기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 연기의 공고 및 통보

▪ 「공직선거법」 제196조제1항에 따라 선거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 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연기할 선거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고, 대통령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에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 연기 후 선거절차

▪ 선거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절차에 이어 계속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연기된 선거는 가능한 한 다음의 선거와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9조, 제3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

-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

▪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어느 투표구의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때와 투표함의 분실·멸실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한 후 해당 선거구의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재투표가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재투표는 가능한 한 보궐선거 등과 함께 실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9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의 사례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란 1투표구 또는 수투표구 내의 전 투표자가 투표를 하지 못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 중 일부의 투표권자가 투표를 행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1960. 12. 13 선거 4293선38 판결).
- 풍랑으로 인한 선거구의 일부인 도서(島嶼)에 거주하는 선거인이 투표하지 못한 경우에 투표하지 못한 선거인 수가 당선자와 차점자의 득표차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 바, 해당 투표구에 대한 재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하는 것은 위법합니다(대법원 1960. 12. 13 선거 4293선38 판결).

재선거 등의 선거일

대통령의 궐위(闕位)에 따른 재선거

▪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제5항제1호).

※ 이때,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1항).

재선거, 증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 재선거(선거의 일부 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제외), 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의 선거일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의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재선거는 매년 2회 실시하되,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1.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의 재선거 및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다만, 3월 1일 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연도의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재선거 중 전년도 9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3. 지방자치단체 장 및 교육감의 재선거 중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 이 경우,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날이나 그 다음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주의 수요일을 선거일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4조제2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중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직무대행자 포함)과 협의하여 정하는 날 실시합니다.

※ 이때,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일전 30일까지 그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

▪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확정판결 또는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실시되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 재선거일을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란 다음에 해당하는 날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

-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법원의 판결 또는 결정에 의해 확정된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그 판결이나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
- 지방의회의원의 증원선거는 새로 정한 시·도의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공직선거법」 별표2) 또는 시·도조례의 효력이 발생한 날
-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의 선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관한 법률의 효력이 발생한 날

연기된 선거 및 재투표

연기된 선거

▪ 연기된 선거 중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각각 그 선거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3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재투표

▪ 천재지변 등에 따른 재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재투표일을 정하여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3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3. 유권자의 선거참여

3.1. 후보자 추천

3.1.1. 후보자 추천

유권자의 후보자 추천

추천대상: 무소속후보자 및 교육감후보자

▪ 관할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각 선거(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는 제외) 별로 정당의 당원이 아닌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를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추천 방법(추천 유권자 수)

▪ 무소속후보자 또는 교육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전 5일(대통령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는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30일,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등은 그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검인하여 교부하는 추천장(「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을 사용하여 선거별로 다음 수에 해당하는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8조제2항·제5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9조제3항).

- 대통령선거: 5개 이상의 시·도에 나누어 하나의 시·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700명 이상으로 한 3천500명 이상 6천명이하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00명 이상 500명 이하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100명 이상 200명 이하
-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해당 시·도의 1/3 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의 수를 50명 이상으로 한 1천명 이상 2천명 이하
-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50명 이상 100명 이하. 다만, 인구 1천명 미만의 선거구의 경우에는 30명 이상 50명 이하

정당후보자의 추천

정당후보자의 추천방법

▪ 정당은 선거에서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당내경선 등(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 포함)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해서 추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1항·제2항 및 제57조의2제1항·제2항).

▪ 정당은 선거별로 일정 비율 이상의 여성후보자를 추천하는 등 여성후보자 추천 확대를 위한 다음의 「공직선거법」에 따른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그 후보자 중 5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매 홀수에는 여성을 추천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 추천 시 지역구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군지역은 제외하며, 자치구의

일부지역이 다른 자치구 또는 군지역과 합하여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자치구의 일부지역도 제외합니다.

후보자추천 관련 금품수수 금지

▪ 누구든지 정당후보자를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전단).

▹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이하 "후보자 등"이라 함), 후보자 등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금을 기부하거나 당비를 납부하는 외에 정당 또는 국회의원(국회의원지역구 또는 자치구·시·군의 당원협의회 대표자를 포함, 이하 "국회의원 등"이라 함) 국회의원 등의 배우자, 국회의원 등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에게 채무의 변제, 대여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때에는 정당이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하여 제공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1항 후단).

▪ 누구든지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4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 정당후보자의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제공을 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거나 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6항).

3.2. 정치자금의 후원 및 기탁

3.2.1. 정치자금의 기부 및 제한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의 종류

▪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1호).

▹ 당비

▹ 후원금

▹ 기탁금

▹ 보조금과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 정치활동을 위해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 위에서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유권자가 기부할 수 있는 정치자금

후원금

▪ “후원금”이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4호).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기탁금

▪ “기탁금”이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정치자금법」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을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5호).

정치자금 기부의 기본원칙

「정치자금법」에 따른 기부

▪ 누구든지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1항).

제한금액의 초과기부

▪ 「정치자금법」에 따라 1회 120만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사람은 수표나 신용카드·예금계좌입금 그 밖에 실명이 확인되는 방법으로 기부 또는 지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4항 본문).

▸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 : 50만원.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의 정치자금은 20만원

▸ 선거비용 : 20만원

본인명의 기부

▪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2조제5항).

위반 시 제재

▪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 실명이 확인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선거기간에 이를 위반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2호 및 제49조제2항제1호).

▪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3호).

기부의 제한

기부의 제한

▪ ① 외국인 ②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1항).

▪ 누구든지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1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이들로부터 기부받은 사람 및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특정행위와 관련된 기부의 제한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32조).

▹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 지방의회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따라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

√ 국가·공공단체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식 또는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법인

√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을 받는 법인

√ 정부가 지급보증 또는 투자한 법인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5호·제3항).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정치자금 기부 시 세제혜택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합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본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본문).

※ 다만, 사업자인 거주자가 정치자금을 기부한 경우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을 뺀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1항 단서).

▪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1항 단서).

※ 연말정산 시 정치자금영수증(기탁금수탁증을 포함)을 제출해야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람은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9조제2항).

▪ 「정치자금법」에 따라 기부된 정치자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2항).

3.2.2. 후원회

후원회 지정권자

후원회의 개념

▪ “후원회”란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3조제7호).

후원회 지정권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하나의 후원회를 지정해 둘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6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 국회의원(국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
- 지방의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의 당선인을 포함)
-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경우는 제외)
-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는 제외)
- 지방자치단체장선거 및 교육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위반 시 제재

▪ 후원회 지정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후원회나 이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운영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1호·제3항).

후원회의 회원

후원회의 회원

▪ 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8조제1항, 제31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당법」 제22조 및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 외국인, 국내·국외의 법인 또는 단체
-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따라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인 교원은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
-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위반 시 제재

▪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이 후원회에 가입하거나 이 사람을 후원회에 가입하게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정치자금법」 제51조제3항제3호).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후원금 모금 한도

▪ 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신용카드·예금계좌·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이용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모금할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그 모금 한도액을 넘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1항, 제13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의 종류	후원금 모금 한도
중앙당후원회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대통령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국회의원후원회	1억5천만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중앙당 대표자 및 최고집행기관 구성원 선출을 위한 당대표경선후보자 후원회	
시·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5천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3천만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선거비용 제한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교육감후보자후원회	

▪ 다음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연도에는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기부할 수 있으며, 같은 연도에 2회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1항).

- 대통령선거 시 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 국회의원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 시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 “공직선거연도”란 해당 선거의 선거일이 속한 연도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13조제2항).

후원금 모금 방법

▪ 후원회는 우편·통신(전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을 말함)을 이용한 모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을 이용한 모금 또는 신용카드·예금계좌 등을 이용한 모금 등의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집회의 방법으로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 사례 >

- 개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을 직접 기부하는 행위
- 후원인이 직접 기부하는 경우 1회 12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실명이 확인되지 않는 방법으로 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직접 정치자금 대여자로부터 차입금을 후원금으로 전환하기로 동의를 받고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 동창회나 종교모임이 후원금을 모금하는 행위
- 정치활동을 위해 개설·운영하는 유튜브채널·팟캐스트 등 소셜미디어의 후원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행위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후원금 모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 및 사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 후원금 모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후원금 모금 방법을 위반하여 고지·광고한 사람 및 이러한 방법으로 후원금을 모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호 및 제3항).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모금된 후원금의 기부

▪ 후원회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이를 지체 없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인이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직접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후원회 지정권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지출하거나 금품·시설의 무상대여 또는 채무의 면제·경감의 방법으로 기부하는 경우는 제외)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가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기부받은 날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후원회를 둘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 날) 이내에 기부받은 후원금과 기부자의 인적사항을 자신이 지정한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한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기부받은 것으로 봅니다(「정치자금법」 제10조제3항).

후원금 기부 한도

▪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후원회가 모금할 수 있는 연간 모금 한도액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금의 이월

▪ 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해산한 후원회의 후원금

▪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 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2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 후원회가 해당 후원회 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불법후원금의 반환

불법후원금의 반환

▪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후원인으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이 「정치자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청탁 또는 불법의 후원금인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후원금을 후원인에게 반환하고,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회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불법후원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 이 경우,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지 못해 불법후원금을 반환할 수 없거나 후원인이 반환받기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를 국고에 귀속시켜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8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3.2.3. 후원금

후원인의 후원금 기부

후원금 기부 방법

▪ 후원인(후원회 회원 여부와 관계없음)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6항,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회의 회원은 연간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의 후원금을 기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 후원을 하려는 사람은 본인이 후원하려는 후원회에 직접 후원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후원할 수 있습니다.

▪ 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평가합니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와 감정평가법인,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해 그 가액을 평가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15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정치자금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람을 말함)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사람의 관계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Q. 공무원도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A. 공무원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행위에 대해 「정치자금법」상 제한 규정은 없지만 이러한 행위가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정치적 목적을 갖고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후원금기부-후원금이란? 참조).

후원금 기부 한도

▪ 후원인이 후원회에 기부하는 후원금의 총액은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또한, 후원인이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후원회 종류	연간기부한도
대통령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각 1천만원 이하
중앙당후원회	500만원 이하
국회의원후원회	
국회의원선거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중앙당 대표자 및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당헌으로 정하는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을 말함)의 구성원을 선출하기 위한 당내경선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교육감후보자후원회	
시·도의회의원후원회	200만원 이하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자치구·시·군의회의원후원회	100만원 이하
지역구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예비후보자) 후원회	

▪ 후원인은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의 경우에는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거나 타인의 명의 또는 가명으로 후원금을 기부한 경우 그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11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 후원회에 연간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 및 하나의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을 초과하여 기부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2호·제3항).

▪ 익명기부한도액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기부한 사람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금의 초과분 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한 금액을 국고에 귀속시키지 않은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8조제4호·제6호).

정치자금영수증

정치자금영수증의 교부

▪ 후원회가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은 날부터 30일까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 또는 무정액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후원인이 정치자금영수증 수령을 원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익명기부 등으로 후원인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후원회가 이를 발행하여 보관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 기부에 대한 정치자금영수증은 해당 연도 말일에 일괄 발행·교부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의 종류

▪ 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정액영수증은 1만원·5만원·10만원·50만원·100만원·500만원의 6종의 금액으로 표시되는 영수증입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9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무정액영수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무정액영수증은 1회 10만원 미만의 후원금이나 10만원을 초과하여 기부한 후원금의 경우라도 1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후원금에 한해 교부할 수 있는 영수증입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3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전자적 형태로 제작한 무정액영수증을 인터넷을 통해 교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3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정치자금영수증의 표시사항

▪ 정치자금영수증에는 후원금의 금액, 그 금액에 대해 세금혜택이 된다는 문언 및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17조제8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 정치자금영수증의 기재금액 또는 액면금액과 상이한 금액을 기부한 사람과 이를 받은 사람, 정치자금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위조·변조하여 이를 사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6조제1호).

3.2.4. 기탁금

기탁금 기탁

기탁금 기탁방법

▪ 개인(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기탁금을 기탁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타인의 명의나 가명을 사용하여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기탁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다만, 이 경우 기탁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기탁금을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3항 후단,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물건을 기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6조 후단).

> ※ **기탁금 기탁하기**
>
>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에 직접 방문하여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고 기탁하는 방법
>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카카오페이, PAYCO, 전자결제, 휴대폰결제 등으로 결제하여 기탁하는 방법
>
> · 선거관리위원회 기탁금 수탁계좌에 무통장 입금 후 기탁서(「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제출하는 방법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
> <정치후원금센터 홈페이지-기탁금기부-기탁금기부안내>

기탁금 수탁증

▪ 기탁금을 기탁한 기탁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기탁금수탁증(「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별지 제25호서식)을 교부받습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7조제1항).

기탁금 한도

▪ 1명이 기탁할 수 있는 기탁금은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5% 중 큰 액수 이하로 기탁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기탁된 기탁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정치자금법」 제22조제2항, 제24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위반 시 제재

▪ 정치자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지 않고 기부하거나 받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그 제공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되며,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정치자금법」 제45조제2항제4호·제3항).

기탁금의 배분과 지급

기탁금 배분·지급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물건을 공매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 말일의 14일 이내에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1항).

▪ 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정당은 기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28조제2항).

국고보조금 배분율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은 지급 당시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대해 그 50%를 정당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 국회에 20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됩니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국회법」 제33조제1항).

보조금 지급 당시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않은 정당으로서 5석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 대해서는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에 대해서는 보조금의 2%씩을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2항).

1.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의 경우에는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2.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 중 위의 1. 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으로서 의석을 가진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0.5% 이상인 정당
3. 최근에 실시된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의 경우에는 최근에 전국적으로 실시된 후보추천이 허용되는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선거, 지역구시·도의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또는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득표한 득표수 비율이 2% 이상인 정당

「정치자금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분·지급액을 제외한 잔여분 중 50%는 지급 당시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그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하고, 그 잔여분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지급합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3항).

선거보조금은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에 대해서는 배분·지급하지 않습니다(「정치자금법」 제27조제4항).

인적사항의 공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탁금을 배분·지급하는 때에는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는 조건으로 기탁한 경우를 제외하고, 1회 300만원을 초과하여 기탁한 사람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공개합니다(「정치자금법」 제2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3.3. 선거운동의 참여 및 제한

3.3.1. 선거운동 개요

선거운동의 개념

선거운동의 개념

▪ "선거운동"이란 선거에서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본문).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으며, 이는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유권자가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1항 단서).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 통상적인 정당활동
- 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포함. 이하 같음)로 전송하는 행위

▪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의2).

- 호별로 방문하여 하는 경우
-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하는 경우
-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를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 현수막 등 시설물, 인쇄물, 확성장치·녹음기·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 어깨띠, 표찰,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하는 경우(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나타내어 하는 경우에 한정)

선거운동의 자유

선거운동의 자유

▪ 「공직선거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선거운동의 자유를 침해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1항).

- 선거인·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하는 행위
-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에 따라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사람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하거나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 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 또는 참관인·선장·입회인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1호 및 제7호).

▪ 위의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제15조제2항제3호, 제53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 단서·제2호,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3호).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

  ※ 다만,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18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외국인이더라도 해당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18세 미만인 사람)

-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무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다만,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국회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감선거의 경우 국립학교의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인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사람(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의 상근 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및 상근직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외의 사립학교 교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주민자치센터”는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합니다.

※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해 조례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합니다.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함)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예비후보자·후보자의 배우자이거나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인 경우는 제외)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임에도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의 복직 제한 등

▪ 각급선거관리위원회위원·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교육감선거는 제외)에는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 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며, 선거일 후 6개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까지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辭職願)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제2항 후단 및 제53조제4항).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1항,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5조제1항).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 법령에 따라 정치활동이나 공직선거에의 관여가 금지된 단체
-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거나, 이들의 재산을 출연하여 설립하거나, 후보자 등이 운영경비를 부담하거나 관계법규나 규약에 따라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관·단체
- 구성원의 과반수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이루어진 기관·단체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적·금전적 지원을 받는 자원봉사단체 및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자원봉사센터

사조직 등 단체 설립·설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 또는 선거운동을 위한 설립·설치가 금지된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20조).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학교, 그 밖에 공공기관·사회단체·종교단체·노동단체·청년단체·여성단체·노인단체·재향군인단체·씨족단체 등의 기관·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에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2호·제7호).

▪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단체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의 대표자는 재외선거권자(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를 말함. 이하 같음)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6항).

-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협력단
-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제교류재단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 모든 단체(그 대표자와 임직원 또는 구성원을 포함)는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14제7항).

위반 시 제재

▪ 국외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또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국외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20호).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 및 제60조의3제1항제2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습니다.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 이 경우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 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해당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경우

※ 이 경우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옥내(대관 등으로 해당 시설이 본래의 용도 외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제외)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 선거일에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1항).

▪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선전시설물·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신문·뉴스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좌담회·토론회·향우회·동창회·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 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4조제2항).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

▪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에는 선거사무관계자가 되어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과,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3.3.2. 일반유권자(자원봉사자)의 선거운동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의 개념

▪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대가 없이 선거운동을 하는 유권자를 말합니다.

▹ 일반 유권자가 순수한 마음으로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에 해당합니다.

▹ 수당과 실비 등을 받고 선거운동 사무에 종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서

제외됩니다.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운동 자원봉사자
범 위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일반인으로서 선거운동을 하는 자 선거사무소 등에 자원봉사자로 등록된 자
수당 지급 여부	수당·실비 등 지급	수당·실비, 그 밖에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불가

자원봉사자인 유권자의 선거운동 수당·실비 등 보상 금지

▪ 자원봉사자인 유권자는 선거사무소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실비와 같은 금품, 그 밖의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3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4호·제7호 및 제3항).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행렬·인사 등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 호소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까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하여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하는 사람 또는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등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명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 ※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 방법**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3. 선거사무관계자 등의 선거운동

선거사무관계자

선거사무관계자

▪ "선거사무관계자"란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및 선거연락소에서 근무하며 실비와 수당을 지급받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등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제2항·제4항·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사무관계자의 정원(定員) 및 제한

▪ 선거사무장 및 선거연락소장

▹ 「공직선거법」 제61조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에는 선거사무장 1명, 선거연락소에는 선거연락소장 1명을 두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사무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후보자(대통령, 비례대표국회의원, 비례대표시·도의회의원 및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사무장을 겸한 것으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사무원

▹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연락소장은 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는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사무원이 된 경우에도 선거사무원수에는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6배수 이내
	시·도선거연락소에 해당 시·도 안의 구·시·군의 수 이내 ※ 하나의 구·시·군이 2개 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하며, 그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구·시·군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읍·면·동이 설치·폐지·분할·합병되어 총 읍·면·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직전의 읍·면·동을 말함)의 수 이내(「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제2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읍·면·동수의 3배수에 5를 더한 수 이내. ※ 읍·면·동의 수의 3배수에 추가로 둘 수 있는 5명은 선거사무소에 둡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8조제2항). ※ 선거연락소를 두지 않는 경우에는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선거사무원의 수만큼 선거사무소에 더 둘 수 있습니다.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2배수 이내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10명 이내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산정한 수가 20개 미만인 때에는 20명 이내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시·도 내의 구·시·군의 수 이내 ※ 구·시·군의 수가 10개 미만인 때에는 10명 이내
	선거연락소에 해당 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8명 이내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해당 자치구·시·군 내의 읍·면·동의 수 이내

▹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선거사무원(선거사무장을 포함)을 둘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원의 정원(「공직선거법」 제6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의 종류	선거사무원의 정원
대통령선거	10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5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3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2명 이내(선거사무장을 포함)

▪ 활동보조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비후보자·후보자는 그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활동보조인은 선거사무원의 정원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4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1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모든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 청각장애인 및 언어장애인 외에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인인 예비후보자·후보자가 활동보조인을 두기 위해 활동보조인의 선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이나 장애인증명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발행한 것으로 위의 장애인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7조의3제2항).

선거사무관계자 모집의 제한

▪ 같은 선거에서는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62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정원을 초과하여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을 선임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4호).

▪ 같은 선거에서 2개 이상의 정당, 2명 이상의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동일인을 함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선거사무원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3호).

대면(對面)을 통한 선거운동

어깨띠 등 소품 이용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명을 포함)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및 소속 정당명,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어깨띠나 윗옷(상의)·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을 붙이거나 입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깨띠 등의 소품은 다음의 규격 또는 금액에 해당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및 제26조의2제8항제1호).

- 어깨띠는 길이 240cm, 너비 20cm 이내의 것
- 윗옷은 「공직선거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의 수당의 기준금액(6만원) 이내
- 마스코트, 표찰, 수기, 그 밖의 소품은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된 것

▪ 위반 시 제재

-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가 규격 및 가격 등에 위반되는 어깨띠 등의 소품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어깨띠, 모자나 옷, 표찰·수기·마스코트·소품, 그 밖의 표시물을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행렬·인사 등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5명(후보자와 함께 있는 경우에는 후보자를 포함하여 1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리를 지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거리를 행진하는 행위
-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인사하는 행위. 다만,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는 그 수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연달아 소리지르는 행위. 다만, 「공직선거법」 제79조에 따라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해당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기 위해 연달아 소리지르는 경우는 인원의 제한이 없습니다.

▪ 위반 시 제재

- 정해진 인원을 초과하여 무리를 지어 거리행진·인사 또는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6호).

공개된 장소에서 지지호소

▪ 선거사무관계자인 유권자는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시장·점포·다방·대합실,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연설·대담 등을 통한 선거운동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는 제외)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하기 위해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이란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과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 또는 점포, 그 밖에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를 방문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장소"란
도로변·광장·공터·주민회관·시장·점포·공원·운동장·주차장·선착장·방파제·대합실(검표원에게 개표하기 전의 대기장소를 말함) 또는 경로당 등 누구나 오갈 수 있는 공개된 장소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및 선거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및 제237조제3항·제4항).

▹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연설·대담장소에 들어간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2항·제3항).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시간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또는 휴대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여 연설·대담 또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차목).

연설·대담의 금지장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물·시설.

※ 다만, 공원·문화원·시장·운동장·주민회관·체육관·도로변·광장 또는 학교, 그 밖에 다수의 사람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는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할 수 있습니다.

▹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 구내 및 지하철역 구내

▹ 병원·진료소·도서관·연구소 또는 시험소, 그 밖의 의료·연구시설

▪ 위반 시 제재

▹ 연설·대담장소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6호).

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위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자동차와 이에 부착된 확성장치 및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확성장치 각 1조
-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와 구·시·군선거연락소마다 자동차 각 1대·확성장치 각 1조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후보자마다 자동차 1대·확성장치 1조

▪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휴대용 확성장치는 연설·대담용 차량이 정차한 지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차량 부착용 확성장치와 동시에 사용할 수 없으며,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를 사용할 때 확성나발의 수는 1개를 넘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4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확성장치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소음기준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8항).

√ 자동차에 부착된 확성장치: 정격출력 3kW 및 음압수준 127dB(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40kW 및 음압수준 150dB)

√ 휴대용 확성장치: 정격출력 30W(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용 또는 시도지사선거 후보자용은 정격출력 3kW)

▪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다음의 표지를 부착해야 하고,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및 후보자 사진을 붙일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후단 및 별지 제19호의3서식).

- 확성장치의 표지를 신청하는 경우 시험기관이 발급한 확성장치(스피커를 말함)의 시험성적서 또는 제품검사성적서 등 소음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본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이를 첨부하지 않거나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표지를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3항).



[현수막·자동차·선박·확성장치 등의 표지]

※ 표지를 신규 또는 재발급받으려면 후보자용은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선거연락소용은 그 선거연락소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6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2항 후단).

※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는 해당 시·도 및 구·시·군선거연락소의 관할구역안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7항).

▪ 위반 시 제재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 등의 사용 방법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자동차, 확성장치, 녹음기 및 녹화기에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연설·대담을 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8호 및 제261조제8항제2호라목).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 시 소음기준을 초과한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3호의2).

연설·대담 시 녹음기 또는 녹화기 사용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하는 때(후보자 등이 연설·대담을 하기 위해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거나 해당 자동차 주위에서 준비 또는 대기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를 제외하고 후보자와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의 선거연락소에 한정함)마다 각 1대의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 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음악 또는 선거운동에 관한 내용을 방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녹음기 및 녹화기에는 위의 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0항, 제102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녹화기는 소리의 출력 없이 화면만을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2조제2항 단서).

▪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녹화기 화면은 다음의 규격에 따릅니다(「공직선거법」 제79조제1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3조제8항)

▹ 대통령선거의 시·도선거연락소용 및 시·도지사선거의 후보자용: 10㎡ 이내

▹ 대통령선거와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의 구·시·군선거연락소용,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후보자용: 5㎡ 이내

▹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용: 3㎡ 이내

▪ 위반 시 제재

▹ 녹음기 또는 녹화기의 사용대수를 초과하여 사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다목).

▹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경우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 포함)를 사용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오후 9시부터 오후 11시 사이에 소리를 출력해서 녹화기를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5항제10호 및 제261조제3항제4호의2).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까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함. 이하 같음)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3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 전화통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를 제외한 시간에 전화를 이용해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4호, 제109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할 수 없으며,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이들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4제2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전화를 이용해 음성으로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시간 및 방법을 어기거나 성명 등을 허위로 표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3조 및 제255조제1항제19호).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문자메시지 전송을 이용한 선거운동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전송할 수 있고, 그 횟수는 8회(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 포함)를 넘을 수 없으며,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2호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사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

▪ 위반 시 제재

▹ 후보자나 예비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거나, 8회를 초과하여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 ※ 선거운동 등 선거 관련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자료공간>에서, 선거법령정보 및 문의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참여마당-선관위 신문고-정치관계법질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3.4. 제한 · 금지되는 선거운동

기부행위 등의 금지

기부행위의 개념

▪ "기부행위"란 해당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해당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

※ 기부행위에 속하지 않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부행위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 관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그 소속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해당 선거에 관해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봅니다(「공직선거법」 제115조 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금지되는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기부받은 이익이 몰수되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이 추징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7조제2항·제4항).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로 전송하게 하고 그 대가로 금품, 그 밖에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과 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 및 제7호).

또한, 이러한 행위를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

선거와 관련하여 금전·물품·음식물 등을 제공 받은 경우의 과태료

Q.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부터 식사대접을 받은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기부행위가 제한되는 사람으로부터 기부를 받은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에게는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주례의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의 상한은 3천만원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본문 및 제113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제5항 및 별표 3의2).

1. 금전·물품·음식물·서적·관광, 그 밖의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사람
2.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금품, 그 밖의 이익을 제공받은 사람
3.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그 배우자에게 주례행위를 제공받은 사람

※ 다만, 위 1. 및 2.에 해당하는 사람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제공받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 등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하고 자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 단서).

컴퓨터, 그 밖의 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정보 전송 제한

▪ 수신거부의사에 반한 정보의 전송 금지

▹ 누구든지 정보수신자의 명시적인 수신거부의사에 반해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운동정보 명시

▹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을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로 전송하거나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으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선거운동정보에 명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2항).

√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

√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 그의 전화번호

√ 불법수집정보 신고 전화번호

√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 수신거부 회피목적 조치 금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의 수신거부를 회피하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기술적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기술적 장치를 이용한 정보전송 금지

▹ 누구든지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수신거부 시 금전적 부담 금지

▹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사람은 수신자가 수신거부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그 밖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5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위의 선거운동정보의 전송 제한사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4항).

인터넷광고 금지

▪ 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함)가 정해진 요건에 따라 인터넷광고를 하는 것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7제1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후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위해 인터넷광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전화, 그 밖의 방법을 통한 협박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선거권자 등에 대해 전화, 그 밖의 방법으로 협박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9호).

딥페이크영상등의 이용 제한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또는 영상 등("딥페이크영상등"이라 함)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1항).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가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하여 만든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의3에 따라 해당 사항을 딥페이크영상등에 표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82조의8제2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5조의6).

▪ 위반 시 제재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5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4항).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을 위한 딥페이크영상등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1조제3항제4호).

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영화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저술·연예·연극·영화 또는 사진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저술·연예·연극·영화나 사진을 배부·공연·상연·상영 또는 게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5호).

방송·신문 등을 이용한 광고 금지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통신 또는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등 언론매체를 통해 광고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기간 중에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신문 등을 이용하여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금지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에 유리·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그 밖의 간행물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하거나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살포·게시·첩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신문·잡지 등을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통신·잡지 그 밖의 간행물을 경영·관리하는 사람 또는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사람에게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을 위해 방송·신문의 불법이용을 위한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5조제1항).

방송시설 이용 등의 제한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방법의 여하를 불문하고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위한 방송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 중 교통수단·건물 또는 시설의 방송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8조, 제9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경우가 아니면 녹음기나 녹화기(비디오 및 오디오기기를 포함)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방송시설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2조제3항).

▹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은 방법으로 녹음기 녹화기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6호).

소품·시설물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어깨띠 등 소품 이용 제한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 범위의 소형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하여 몸에 붙이거나 지니고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8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제2항).

▪ 위반 시 제재

▹ 소품등의 규격을 위반하여 소품등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5호).

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 120일 전(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른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하는 행위

- 위반 시 제재

정해진 기간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선전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확성장치와 자동차 등의 사용 제한

- 누구든지 공개장소에서의 연설, 대담장소 또는 대담·토론회장에서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라 연설·대담장소에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선거벽보 등을 자동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경우 외에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1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확성장치나 자동차를 사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4호).

집회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각종 집회 등의 제한

-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 개최 금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에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향우회, 동창회, 반상회 등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또는 참가 인원이 25명을 초과하는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3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누구든지 선거일 90일 전(선거일 9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3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선거기간 중 특정 국민운동단체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모임을 개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1항제4호).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출판기념회 등을 개최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카목).

▹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야유회·동창회·친목회·향우회·계모임, 그 밖의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물품·음식물,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한 사람,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그 제공을 약속한 사람, 제공을 받은 사람 및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제7호)

▹ 「공직선거법」 제230조제1항제3호·제6호에 따른 행위에 대해 지시·권유·요구하거나 알선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당선이 되거나 되게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기간 중 포장된 선물 또는 돈봉투 등 다수의 선거인에게 배부하도록 구분된 형태로 되어 있는 금품을 운반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0조제3항·제4항).

연설회장에서의 소란행위 등 금지

▪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장소, 대담·토론회장 또는 정당의 집회장소에서 폭행·협박,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연설·대담장소 등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그 진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연설·대담 등의 주관자가 연단과 그 주변의 조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횃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연설·대담장소 등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횃불을 사용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연설·대담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하는 경우에는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3년·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지닌 물건은 몰수됩니다(「공직선거법」 제237조제3항·제4항 및 제256조제3항제1호타목).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금지되는 사람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항제8호).

▹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선임비서관·비서관 및 지방의회의원은 제외)

※ 교육감선거의 경우에는 모든 공무원

▹ 선상투표신고를 한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선장

▹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및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공직선거법」 제5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

▹ 통장, 이장, 반장

▹ 주민자치위원회위원

▹ 향토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조직 및 구·시·군조직을 포함)의 대표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의 범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판례는 공무원이 방송사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인 입후보예정자를 위하여 토론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한 대담자료를 작성하거나 예행연습을 한 행위는 모두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계획 수립에 활용되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어서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11.15. 선고 2007도3061 판결).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공무원 등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다음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0호 및 제256조제3항제1호바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속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교육, 그 밖에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

√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 정당 또는 후보자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 선거기간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 즉시 공사를 진행하지 않을 사업의 기공식을 거행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정상적 업무 외의 출장을 하는 행위

√ 선거기간 중 휴가기간에 그 업무와 관련된 기관이나 시설을 방문하는 행위

지위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공무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 그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2항, 제53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한국은행을 포함) 및 상근 임직원
-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상근 임직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
-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상근 임직원
-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의 임직원

▪ 위반 시 제재

- 공무원으로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3항제2호).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범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 기간은 10년입니다(「공직선거법」 제268조제3항).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系列化)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기업조직·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9호).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 누구든지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5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교육적인 특수관계에 있는 선거권이 없는 자에 대해 교육상의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9호).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설치 금지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설립·설치 금지

▪ 누구든지 선거에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7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및 선거대책기구 외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해 선거추진위원회·후원회·연구소·상담소 또는 휴게소, 그 밖에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이와 유사한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새롭게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89조제1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선거에서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 그 밖의 단체를 설립·설치하거나 설립·설치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1호).

▪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 후보자를 위해 유사기관을 설립·설치하거나 기존의 기관·단체·조직 또는 시설을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3호).

그 밖의 제한

탈법방법을 통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에 따르지 않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12월 29일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93조제1항 및 제255조제2항제5호 중 제93조제1항의 각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헌법재판소 2011. 12. 29. 2007헌마1001).

▪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신문 또는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그 밖의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徵求)하거나 하게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93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일 전 120일(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선거 또는 재선거, 보궐선거·재선거·증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 또는 합병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선거의 일부무효에 따른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 선거운동을 하도록 권유·약속하기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신분증명서·문서, 그 밖의 인쇄물을 발급·배부 또는 징구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2항제5호).

호별(戶別)방문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를 위해 또는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해 호별 방문을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6조제1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이나 선거기간 중 입당의 권유 및 선거기간 중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을 통지하기 위해 호별방문을 하거나 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7호).

서명·날인운동 금지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이나 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7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에 대해 서명·날인을 받거나 받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5조제1항제18호).

여론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등 금지

▪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따른 경우를 포함)의 경위 및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한 여론조사 및 후보자·정당 명의의 여론조사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 60일 전(선거일 6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08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선거일 6일 전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여론조사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 또는 인용하여 보도한 사람, 선거일 60일 전(선거일 60일 전 이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이용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 금지행위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공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제1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됩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허위사실 등에 대한 이의제기

▹ 누구든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공표된 사실이 거짓임을 이유로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10조의2제1항).

▪ 위반 시 제재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사람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1조).

▹ 당선이 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신분·직업·경력 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

▹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0조제2항).

4.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

4.1. 투표권자

4.1.1. 일반선거인

선거인

선거인

▪ “선거인”이란 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공직선거법」 제3조).

선거권이 있는 사람

선거권이 있는 사람

▪ 선거별로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대통령 및 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

▹ 지역구국회의원선거권: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국회의원지역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선거권자의 연령은 선거일 현재로 산정합니다(「공직선거법」 제17조).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권: 18세 이상으로서 「공직선거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자

선거권이 없는 사람

선거권이 없는 사람

▪ 선거일 현재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사람(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함)

※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 2014년 1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집행유예자의 선거권 제한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한, 집행유예자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지 않고 일반인과 동일한 사회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그들의 선거권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는 선거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의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하여 단순위헌을 결정함으로써 집행유예자도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헌법재판소 2014. 1. 28. 2013헌마105).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

√ 선거범

√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 대통령·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으로서 그 재임 중의 직무와 관련해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가중처벌 되는 경우를 포함) 제129조(수뢰, 사전수뢰)부터 제132조(알선수뢰)까지·「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서는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예)와 관계없이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선거인명부 열람 등

선거인명부 열람

▪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시·군에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도록 제한됩니다(「공직선거법」 제40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이의신청

▪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誤記)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해당 구·시·군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의신청을 접수한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해야 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불복신청

▪ 이의신청의 결정에 대해 불복이 있는 이의신청인이나 관계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불복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불복신청을 접수받은 때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과 관계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이의신청 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날까지 구·시·군의 장의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해 정당한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선거권자 또는 구·시·군의 장은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서(「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주민등록표등본 등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날의 다음 날까지 그 내용을 심사·결정하고, 그 신청이 이유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하여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게 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이유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과 관계 구·시·군의 장에게 통지합니다(「공직선거법」 제4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 **재외선거인의 개념 및 재외선거인등록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1.2.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신고

거소투표신고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은 제외)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거소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1항 전단·제3항·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4항제5호의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1항·제6항).

- 법령에 따라 영내 또는 함정에 장기 기거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영내(營內) 또는 함정에 근무하는 사람(소속기관 장의 확인 필요)
- 병원·요양소·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기거하는 사람(해당 시설 장의 확인 필요)
-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주소지 또는 머무는 곳의 통·리·반장의 확인 필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 가기 어려운 멀리 떨어진 외딴 섬 중 「공직선거관리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섬에 거주하는 사람(확인 불필요)

-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장기 기거하는 사람으로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10일 전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공고하는 사람(확인 불필요)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 ※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는 이 콘텐츠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투표권자-일반선거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거소투표 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거소투표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주소, 거소

> ※ 감염병환자 및 격리자 등은 본인이 입원치료시설치료격리 중인 해당 시설의 장의 확인을 받으면 됩니다.

선상투표신고

▪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선거인명부작성기간 중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승선하고 있는 선원이 해당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적 방식을 포함함)로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이나 해당 구·시·군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상투표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 전단).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법」 제2조에 따른 대한민국 선박[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裸傭船)을 포함]

  √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 「해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중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선박

▪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선상투표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적고, 이를 해당 선박의 소유자(「공직선거법」 제3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 또는 해당 선박 선장에게 확인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38조제3항 전단,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

- 선상투표 사유

- 성명, 성별, 생년월일
- 주소, 해당 선박의 명칭과 팩시밀리 번호

해외여행 중에도 투표를 할 수 있나요?

Q. 저는 만 25세의 청년으로서 1년간 해외로 어학연수 겸 여행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두 달 후에 대통령선거가 있네요. 투표를 꼭 하고 싶은데 해외에서도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사람은 제외)로서 ① 사전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출국하여 선거일 후에 귀국이 예정된 사람과, ② 외국에 머물거나 거주하여 선거일까지 귀국하지 않을 사람은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해외에서 투표를 할 수 있으며, 이를 국외부재자투표라고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투표를 하려는 선거권자(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는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선거권자는 제외)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일 150일 전부터 선거일 60일 전까지 서면·전자우편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관할 구·시·군의 장에게 국외부재자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기간에 해외에 있는 경우에는 공관(公館)을 경유하여 신고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8조의4제1항).

국외부재자 신고를 하고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국외부재자투표일에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 국외부재자신고의 절차 및 방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4.2.1.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예비후보자의 확인

예비후보자 홍보물

▪ 유권자는 예비후보자의 사진·성명·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된 예비후보자 홍보물로 예비후보자에 대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 참조).

그 밖의 예비후보자 확인 방법

▪ 유권자는 예비후보자 홍보물 외에 다음의 방법으로도 예비후보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1호·제2호·제5호 및 제60조의4).

- 선거사무소에 설치·게시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 홍보를 위한 명함
- 선거운동을 위해 착용하거나 소지하여 내보이는 예비후보자의 어깨띠, 그 밖의 표지물
- 예비후보자 공약집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Q1. 선거기간도 아닌데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나눠줄 수 있나요? A1. 예비후보자는 선거기간이 아니라도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59조제1호 및 제60조의3제1항제2호).
Q2. 출근길에 지하철역 앞에서 “ 입니다”라고 명함을 나눠주던데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불법선거운동 아닌가요? A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2항).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예비후보자가 지정한 1명)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

후보자 및 정당의 확인

선거벽보

▪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소속정당명·경력·정견 및 소속정당의 정강·정책,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이 게재된 선거벽보를 통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4조제1항 본문 참조).

선거공보

▪ 선거운동을 위해 작성된 책자형 선거공보를 통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5조제1항 전단).

선거공약서

▪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공약 및 그 추진계획, 사진·성명·기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한 선거공약서를 통해 해당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6조제1항·제2항).

그 밖에 후보자 및 정당 확인 방법

▪ 유권자는 선거벽보,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외에 다음의 방법을 통해서도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67조부터 제74조까지, 제79조, 제81조부터 제82조의4까지 및 제82조의7 참조).

- 선거운동을 위해 해당 선거구안의 읍·면·동마다 게시된 현수막
-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관계자가 착용하거나 지닌 어깨띠·윗옷·표찰(標札)·수기(手旗)·마스코트, 그 밖의 소품
- 선거운동을 위한 신문광고, 방송광고, 인터넷광고 및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그 밖의 방송, 연설·대담, 대담·토론회
-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전자우편·전화통화·문자메시지로 전송된 선거운동정보

> ※ 재외선거인 및 국외부재자신고인이 후보자 및 정당을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3. 투표의 방법

4.3.1. 투표 개요

투표 개요

투표

▪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1인 1표를 행사합니다. 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를 행사합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를 할 때에는 선거인의 성명 그 밖에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비밀보장

▪ 투표의 비밀은 보장되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따라서 선거인은 투표한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명(政黨名)을 누구에게도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진술할 의무가 없으며, 누구든지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이를 질문하거나 그 진술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다만, 텔레비전방송국·라디오방송국·「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나목에 따른 일간신문사가 선거의 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선거일에 투표소로부터 50m 밖에서 투표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질문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2항 단서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또한,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67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를 요구한 자와 투표결과를 예상하기 위해 투표소로부터 50m 이내에서 질문하거나 투표마감시각 전에 그 경위와 결과를 공표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1조제1항).

> ※ **재외투표소의 설치·운영,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및 발송 등**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3.2. 일반선거인의 투표

투표안내문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

▪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세대별로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의 위치·투표할 수 있는 시간·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 할 지참물, 그 밖에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내용 등이 기재된 투표안내문을 작성하여 선거인명부확정일 2일

후까지 관할구역안의 각 세대에 발송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통보받은 세대에는 점자형 투표안내문을 동봉하여 발송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방법

투표시간

▪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까지 이지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8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보궐선거 등의 경우에는 오후 9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6항 및 제6조의3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의 투표시간은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 다만, 투표 마감 시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은 번호표를 부여받아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려서 입원치료자가(自家)치료 시설치료 중이거나, 감염병이 의심되어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은 사전투표소에서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5조제6항 및 제6조의3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방법

▪ 투표용지 수령

▹ 선거인은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명부에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拇印)하고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2조제2항).

< 신분증명서 >

√ 주민등록증

√ 여권

√ 운전면허증

√ 공무원증

√ 국가보훈등록증

√ 장애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

√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격증

√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이들 기관이 기록·관리하는

것으로서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기표

▹ 선거인은 투표용지(「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42호 서식)를 받은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한 후 기표용구로 투표용지의 해당 란에 기표한 후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투표참관인의 앞에서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기표용구의 모양 >

▹ 기표 시에는 위 모양의 기표용구만을 사용해야 하며(「공직선거법」 제159조 본문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후 그 선거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투표용지가 훼손되거나 더렵혀진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인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해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같은 기표소 안에 2명 이상이 동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위반 시 제재

▪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1호).

투표의 제한

투표의 제한

▪ 선거인명부에 올라 있지 않은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거인명부 열람에 따른 이의신청 및 불복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온 사람은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6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더라도 선거일 현재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투표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 시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투표소 출입제한

▪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투표참관인·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마목).

무기 등 휴대금지

▪ 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5조 및 제164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1항).

소란언동 금지

▪ 투표소 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의 행위로 인해 퇴거당한 선거인은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 누구든지 선거일에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3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선거일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투표지의 촬영 금지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4.3.3. 사전투표, 거소투표 및 선상투표

사전투표

사전투표의 요건

▪ 선거인(거소투표자와 선상투표자는 제외)은 누구든지 사전투표기간인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48조제1항, 제158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사전투표의 기표방법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은 사전투표소에서 신분증명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전단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이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2항 후단).

▪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않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관리관은 해당 구·시·군위원회의 관할구역(하나의 구·시·군위원회 관할구역 안에서 2 이상의 지역구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함)의 선거인에게는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5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6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선거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사전투표함에 넣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보조 등

▪ 사전투표를 하려는 사람은 투표소의 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 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7조제6항, 제158조제7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1호).

거소투표

거소투표 방법

▪ 거소투표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송부 받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2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등

▪ 정당한 사유 없이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 거소투표자의 투표를 공개하거나 공개하게 하는 등 거소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2호).

선상투표

선상투표소의 설치

▪ 선장은 선거일 전 8일부터 선거일 전 5일까지의 기간 중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자의 수와 운항사정 등을 고려하여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를 정하고, 해당 선박에 선상투표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장은 지체 없이 선상투표자에게 선상투표를 할 수 있는 일시와 선상투표소가 설치된 장소를 알려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1항).

투표의 비밀보장 등

▪ 선장은 선상투표소를 설치할 때 선상투표자가 투표의 비밀이 보장된 상태에서 투표한 후 팩시밀리로 선상투표용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설비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2항).

▪ 선장은 선상투표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 중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1명 이상(해당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1명뿐인 경우는 제외)을 입회시켜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3항).

선상투표의 방법

▪ 선장은 선상투표소에서 선상투표자가 가져 온 선상투표용지의 해당 서명란에 입회인과 함께 서명한 다음 해당 선상투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해 온 선상투표용지는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4항).

▪ 선상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상투표자는 선거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선상투표용지의 해당란에 기표한 다음 선상투표소에 설치된 팩시밀리로 직접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송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5항).

▪ 전송을 마친 선상투표자는 선상투표지를 직접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선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6항).

봉인 및 제출

▪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후 입회인의 입회 아래 제출된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구분하여 함께 포장한 다음 자신과 입회인이 각각 봉인한 후 보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3제7항).

▪ 선장은 해당 선박의 선상투표를 마친 때에는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해당 선박의 선박원부를 관리하는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대한민국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의 경우 해당 선박회사의 등록지, 외국국적 선박은 선박관리업 등록을 한 지방해양항만청의 소재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로 전송하고, 국내에 도착하는 즉시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보관 중인 봉투를 해당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내에 도착하기 전이라도 외국에서 국제우편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58조의2제8항).

투표의 간섭 및 방해 금지

▪ 투표를 방해하기 위해 투표에 필요한 신분증명서를 맡기게 하거나 이를 인수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에 간섭한 사람 또는 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하거나 투표를 공개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2조제1항제1호).

선장에 의한 선거방해죄

▪ 선장 또는 입회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9조의2제1항).

- 선상투표신고 또는 선상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거나 선상투표용지에의 서명을 거부하는 등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사람의 선상투표용지를 이용하여 선상투표를 하는 행위
- 선상투표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
- 선상투표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권유하는 등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선장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39조의2제2항).

- 선상투표의 일시와 장소를 선상투표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
- 선상투표소를 설치하지 않거나 선상투표소 설비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 선상투표에 입회인을 입회시키지 않는 행위
-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보관하지 않는 행위
- 선상투표관리기록부를 작성·전송하지 않거나 선상투표관리기록부와 선상투표지 봉투와 선상투표용지 봉투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투표 시 제한 및 금지되는 행위

투표소 출입제한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을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투표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3조제1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 사전투표참관인·사전투표관리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 및 그 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과 직원 및 투표사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마목).

무기 등 휴대금지

▪ 사전투표소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공무원·경찰관서장을 제외하고, 누구든지 투표소 안에서 무기나 흉기 또는 폭발물을 휴대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5조 및 제164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무기·흉기·폭발물, 그 밖에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투표소에 함부로 들어간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45조제1항).

소란언동 금지

▪ 사전투표소 안에서 또는 사전투표소로부터 100m 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투표관리관 또는 사전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를 제지당할 수 있으며, 그 명령에 불응하는 때에는 사전투표소 또는 그 제한거리 밖으로 퇴거당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1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의 행위로 인해 퇴거당한 선거인은 맨 마지막으로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소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에라도 투표하게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2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의 퇴거명령에 불응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 금지

▪ 누구든지 사전투표소 안에서 완장·흉장 등의 착용,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제3항·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사전투표소 안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표지를 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바목).

투표지의 촬영 금지

▪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166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2호사목).

> ※ **국외부재자투표**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선거범죄 및 선거쟁송

5.1.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5.1.1. 선거범죄의 신고 및 포상

선거범죄의 범위

선거범죄의 범위

▪ 선거범죄는 「공직선거법」 제16장 벌칙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하며, 「공직선거법」 제261조제9항의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도 선거범죄에 포함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요건

▪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공소청에 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받을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서 이미 포상금을 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이면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제3호).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포상금 지급을 결정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

-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여부
-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
-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위원장이 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본문).

▪ 선거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단서).

▪ 포상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
  - √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해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3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검찰의 선거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 하며,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항).

▪ 포상금 지급 결정

▹ 선거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정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 포상금 지급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공소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포상급 지급 절차

▹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익명으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 포상금의 환수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이 환수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선거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사람이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촬영)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 금지

- 누구든지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2조의2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위반 시 제재
  - 보호되고 있는 선거범죄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선거범죄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직선거법」 제256조제3항제4호).

5.1.2. 정치자금범죄의 신고 및 포상

정치자금범죄의 범위

정치자금범죄의 범위

- 정치자금범죄는 「정치자금법」 제45조부터 제51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정치자금부정수수죄, 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 등)를 말합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1항).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요건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 또는 검찰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찰이 인지(認知)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및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조).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포상금심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하고 포상금 지급 결정을 합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6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 포상대상자에 대한 포상 여부
  -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

▪ 정치자금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면·동위원회는 제외)위원장이 포상하며, 이는 익명으로 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본문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 정치자금범죄의 신고에 따라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제1항 단서 및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제47조제1항).

▪ 포상금의 환수

▹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해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포상금을 환수해야할 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정치자금법」 제54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검찰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포상금 지급

▪ 포상금 지급신청

▹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신고와 동시에 또는 신고한 사건의 종국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 신청서(「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지방공소청장(지방공소청 지청장을 포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

▹ 익명 또는 가명으로 포상금의 지급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해당 지방공소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신청인을 해당 사건 담당 검사로 하며, 익명임을 표시해야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제2항).

▪ 포상금 지급 결정

▹ 정치자금범죄에 대한 포상금 지급결정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6조).

▪ 포상금 지급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7조).

√ 사이버 선거사범과 관련하여 단순히 인터넷에 게시된 내용을 신고한 경우

√ 상대방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 및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등 해당 선거에서 피신고인과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이 공소청 외에 선거관리위원회나 경찰에 이미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이미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

√ 공무원이 자기의 직무 또는 직무였던 사항과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

√ 그 밖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상규에 비추어 부적절한 경우

▪ 포상급 지급 절차

▹ 포상금은 법무부장관이 해당 사건을 종국처분한 지방공소청장을 통해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익명으로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검사가 수령하여 대상자에게 지급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제3항).

▪ 포상금의 환수

▹ 포상금 지급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정치자금범죄를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된 포상금이 환수됩니다(「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의 보호 등

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준용

▪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그 밖에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이하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 함)가 그와 관련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형사절차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중 다음에 해당하는 조항을 준용하여 보호합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불이익처우의 금지)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인적사항의 기재생략)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영상물촬영)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범죄신고자 등에 대한 형의 감면)

인적사항 등의 공개·보도금지

▪ 누구든지 위의 내용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 또는 정치자금 범죄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할 수 없습니다(「정치자금법」 제53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

▪ 위반 시 제재

▹ 보호되고 있는 정치자금범죄 신고자 등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인적사항을 공개·보도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치자금법」 제47조제1항제13호).

5.2. 선거쟁송

5.2.1. 선거소청 및 당선소청

선거소청과 당선소청

선거소청: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

▪ 소청사유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인은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 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table>
<tr><th>선거의 종류</th><th>소청인</th><th>피소청인</th><th>소청기관</th></tr>
<tr><td>지역구시·도의원선거</td><td rowspan="6">·선거인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td><td rowspan="6">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td><td rowspan="3">시·도 선거관리위원회</td></tr>
<tr><td>자치구·시·군의원선거</td></tr>
<tr><td>자치구·시·군의 장선거</td></tr>
<tr><td>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td><td rowspan="3">중앙선거관리위원회</td></tr>
<tr><td>시·도지사선거</td></tr>
<tr><td>교육감선거</td></tr>
</table>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1항).

※ 피소청인이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당선소청: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

▪ 소청사유

▹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당선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

▹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 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의 종류	소청인	피소청인	소청기관
지역구시·도의원선거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후보자	·당선무효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당선인 ·당선인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시·도 선거관리위원회
자치구·시·군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시·도지사선거			
교육감선거			

※ 지역구시선거에는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하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 피소청인이 될 당선인이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공직선거법」 제192조제2항에 의해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제3항에 의해 당선무효가 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소청인이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3항·제4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청 절차

소청장 제출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청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재한 후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청장에는 당사자 수(數)에 해당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5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 피소청인의 성명과 주소
- 소청의 취지 및 이유
- 소청의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
- 대리인 또는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소청장 접수 및 부본 송달

▪ 소청장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소청장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6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답변서 제출 및 부본 송달

▪ 소청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소청인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기일까지 선거소청의 취지와 이유에 대응하는 답변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당사자 수(數)에

상응하는 부본을 첨부해야 하며, 답변서를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그 부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공직선거법」 제219조제7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9조).

소청에 대한 결정

소청에 대한 결정

▪ 소청을 접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소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소청에 대한 결정을 하고, 지체 없이 결정서의 정본을 소청인·피소청인 및 참가인에게 송달하며, 그 결정요지를 공고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0조제1항·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의 결정

▪ 소청을 접수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5.2.2. 선거소송

대통령·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대한 소송

대법원에 선거소송제기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의 효력에 관해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선거에 대한 선거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선거소송

▪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선거의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 및 제220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소제기 사유	원고	피고	소제기 기간
·선거소청의 결정에 불복 ·선거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선거소청인	해당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선거의 종류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2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시·도지사선거 및 교육감선거: 대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고등법원에 선거소송 제기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2조제3항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선거무효의 판결

선거무효의 판결

▪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선거의 전부나 일부의 무효를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5.2.3. 당선소송

대통령·국회의원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송

대법원에 소송제기

▪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에 따른 당선무효(「공직선거법」 제52조제1항·제3항 및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 당선결정의 위법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

▹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후보자를 추천한 정당)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당선결정의 위법(「공직선거법」 제187조제1항·제2항, 제18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89조 및 제194조제4항)을 이유로 선거별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피고로 하여 당선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1항).

√ 대통령선거: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

√ 국회의원선거: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피고가 될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 중 1명이 피고가 됩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3항).

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당선의 효력에 대한 소송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당선소송 제기

▪ 비례대표시·도의원, 시·도지사 및 교육감 당선의 효력에 관한 소청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대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및 제220조제1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당선소송 제기 사유	원고	피고	소송 제기 기간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소청인 ·당선인인 피소청인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소청 결정의 불복에 따른 당선소송 제기

▪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요건에 따라 고등법원에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23조제2항 및 제220조제1항).

당선소송 제기 사유	원고	피고	소송 제기 기간
·당선소청의 결정에 불복 ·당선소청의 결정기간(60일) 도과	·소청인 ·당선인인 피소청인	·당선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소청의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피소청인이 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되는 자에 당선인이 포함되며, 당선인이 피고가 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피소청인이 되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포함됩니다.

※ 당선소송의 제기 기간인 '선거소청의 결정을 받은 날'에는 '선거소청의 결정기간이 도과된 날'도 포함됩니다.

당선무효의 판결

당선무효의 판결

▪ 소장을 접수한 대법원 또는 고등법원은 선거쟁송에서 선거에 관한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해 당선의 무효를 판결합니다(「공직선거법」 제22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